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49 발의연월일: 2025. 4. 2.

발 의 자:권향엽·박해철·조계원

김남근 • 주철현 • 한민수

김문수 • 박지원 • 김병주

김 윤 • 최민희 • 박용갑

정일영 · 정진욱 · 전종덕

임미애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·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음.

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, 경기, 인천, 부산, 대전,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한편, 현행법은 2023년에 2년 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5년 5월 말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,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 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,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,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).

법률 제 호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"2년"을 "4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률 제 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전세피해지원센터) ① 다	제11조(전세피해지원센터) ①
음 각 호의 자는 전세사기피해	
자등(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	
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	
자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법률	
상담 및 금융・주거지원의 연	
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	
피해지원센터(이하 "전세피해	
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・운	
영할 수 있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제1호의 지방자</u>
	치단체 중 특별시・광역시・특
	별자치시・도 및 특별자치도는
	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 • 운
	영하여야 한다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	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
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	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
법 부칙	법 부칙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시행 후	제2조(유효기간)
<u>2년</u> 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	- <u>4년</u>
가진다.	